

조치 명령 이행결과 통보서

접수일자		처리일		처리기간	
건축물 해체		허가(신고) 번호			
개선사항 (증빙사진 등 첨부) ※ 증빙자료가 많은 경우 별도 제출	이행기간				
	년 월 일 ~ 년 월 일 (일간)				
	이행한 내용				
	(사진1)		(사진2)		
(사진1에 대한 설명)		(사진2에 대한 설명)			

「건축물관리법」 제30조의4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의4제1항에 따라 조치 명령에 대한 이행 결과를 제출합니다.

의
의
의

제출인

(서명 또는 인)

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 귀하

첨부서류	1. 조치 명령의 이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2. 현장사진	수수료 없음
------	---	--------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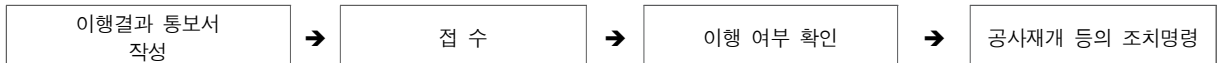
「건축물관리법」 근거규정

「건축물관리법」 제30조의4제2항 및 제3항	1.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현장점검 결과 해체공사가 안전하게 진행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즉시 관리자, 제31조제1항에 따른 해체공사감리자, 제32조의2에 따른 해체작업자 등에게 작업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하며, 조치 명령을 받은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. 2. 허가권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가 이행되었는지를 확인한 후 공사재개 등의 조치를 명하여야 하며, 필요한 조치가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 공사재개 등의 조치를 명하여서는 아니 된다.
---	---

유의사항

「건축물관리법」 제51조제1항제16호 및 제51조의제4호	1. 허가권자의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. 2. 허가권자의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.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

처리절차



신청인
(관리자, 해체공사감리자 및
해체작업자 등)

특별자치시·특별자치도 또는 시·군·자치구 건축물 해체허가(신고) 부서